

충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2008. 3. 5(수)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건축과소관>	이종갑 의원발의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박인규 의원발의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첨단기업 도시지원단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產業建設委員會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2008. 2. 26	2008. 2. 27	2008. 3. 4	2008. 3. 4	이종갑 의원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2008. 2. 26	2008 2. 27	2008 3. 4	2008 3. 4	박인규 의원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 2. 26	2008 2. 27	2008 3. 4	2008 3. 4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 회계 설치 조례안	2008 2. 26	2008 2. 27	2008 3. 4	2008 3. 4	"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무주택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함

나.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날로 고령화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므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

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업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과정별로 각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기업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여 사업의 성과와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관리동 전기료,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료, 승강기전기료, 보일러 전기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쌀 전업농,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안 제7조②)
-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
-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안 제15조)

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산·학·연 연계, 입주기업의 지원, 기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처리한다. (안 제4조)
- 각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안 제9조)
- 위원장은 심의활동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안 제11조)

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기업도시의 특별회계 세입은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시유지 매각대금, 출자 및 출자배당금, 국·도비보조금 등 (안 제3조)
- 기업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토지매입비, 기반시설투자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 (안 제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 우리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연수동 1228번지의 주공2 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총 1,582세대 중 11평형 1,194세대와 13평형 38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해당
- 이 조례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총 821세대이고 나머지 761세대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정도로 생활수준이 열악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 관리사무소의 전기료,
 - 아파트 계단 및 복도등 전기료,

- 승강기 전기료, 보일러가동 전기료,
 - 산업용 전기료라고 되어 있는 저주조에서 물탱크로 올리는 전기료 등이 해당
- 연수주공 2단지의 경우 공동전기료는 연간 세대당 26,000원 정도가 부과되어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 전기료는 연간 2천 2백만원이 소요
- 공동전기료의 다·소를 떠나 본 조례의 경우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줄 경우 형평의 문제가 있음
- 작게는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761세대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크게는 영구임대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3천3백여 수급자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농기계를 임대하게 되면 기계조작이 숙달된 농민들은 덜 하겠지만 기계조작이 미숙한 농민들은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겠음

현재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을 농협은 물론 기타 보험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험문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의 종류와 규격을 별표로 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의 운영·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규정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예산 중 국·도비가 75%인 바 농림부 지침에 의한 기종과 규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겠으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연한 조치라고 여겨짐
- 조례안 제6조에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계조작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농기계에 대하여 숙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조례안 제7조에서 농기계 대여기준은 형평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에 의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의 자격은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쌀 전업농, 작목반, 과수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을 대상 단체나 개인으로 하였는데, 임차대상에서 각종 법인이나 단체는 지난해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시달된 농림부의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임차 대상으로 추가 포함
임대기간은 3일로써 너무 길면 신청대기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짧으면 작업소요시간의 적정성을 보아 3일은 적당하
다고 사료됨

- 농기계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
무를 지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
여 10명 이내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를 구성·운
영 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의 방향은 저 비용으로 농작업까지 해 주는 것과 병
행하여 농민들에게 기계조작은 물론 응급조치까지 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본 조례는 이러한 기업도시 기반조성과 도시조성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방향제시, 의견조정 등 안건이 발생 할 때 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무안군, 태안 군에서는 기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

-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자치조례로 볼 수 있음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라 할 수 있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원들이 분과별로 나누어진 전문분야별로 심의하고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본 조례안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창립한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를 후원하고, 시장의 자문역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거쳐 추진될 기업도시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본 조례에 의하여 기업도시 특별회계를 두고자 하는 것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의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세입의 재원을 보면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 바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는 394만 2천 평방미터의 면적의 시유지가 있음
- 세출예산으로써는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투자비로 하여 기업도시의 기반사업에 사용되도록 정하고 있음
- 기업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충주시의 장기 주요현안으로써 세입·세출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 ▶ 질의 :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수급자의 전기료나, 냉·난방비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이 조례에 의한 것은 공동전기료이지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아님

나.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 질의 :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 답변 : 농가에게 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음

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질의 : 기업도시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요망
- 답변 : 당초에는 지원규정이 미비했었음

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 질의 : 없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 심사보류
(형평성 고려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함)

나.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다.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원안가결

붙임 :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며 하나의 단체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15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농협 조합장대표 1인

【별지1호 서식】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대여기준) ①(생략)</p> <p>②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쌀 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과수주산지역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을 말하며, 하나의 단체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p>	<p>제7조(대여기준) ①(제정안과 같음)</p> <p>②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충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며 하나의 단체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5조(운영 협의회) ①(생략)</p> <p>②운영협의회장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지도 경제총무팀장 3. ~ 7.(생략) 	<p>제15조(운영 협의회)①(제정안과같음)</p> <p>②운영협의회장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지역농협 조합장대표 1인 3. ~ 7.(제정안과 같음)